

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정비방안

- 생활권 내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공급 필요해 -

-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‘시·군·구’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대부분 요보호 노인·장애인·아동수용시설이기 때문에, 사회적 약자가 사회와 ‘통합’되기 위한 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
- 또한,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수한 목적의 시설만 공급되고 있어, 기존의 학교, 공원 등 생활권 내 근린공공시설, 근린생활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
- 따라서, 새로운 공공재원의 투자가 필요한 시설공급보다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, 자원봉사나 민간 복지재단의 활동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, 사회적 약자별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생활권 내에 우선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
 - 노인복지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확충,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개발,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 등이 필요함
 - 장애인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 편의시설의 공급, 도로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, 중증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 등이 필요함
 - 취업여성과 아동을 위해서는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확보,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

1.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본 도시시설의 문제점

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배치문제

-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계획법상 결정기준은 ‘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의 변두리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’(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5)라고 명시하여 주거지역, 인구밀집지역과의 격리를 원칙으로 함
-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이 읍·면·동 단위의 소생활권이 아니고 대부분 ‘시·군·구’가 중심이기 때문에, 장애인, 노인 등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접근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
- 생활권 내에 사회적 약자의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진정한 재가복지(가정에 살면서 사회적 도움을 받는 복지정책)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, 기존의 인구밀집지역과 격리된 수용시설의 공급은 바람직하지 않음

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부족

-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요보호 노인·장애인·아동 수용시설 등으로,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‘통합’하는 데 필요한 이용시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
- 장애인의 경우,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취업이나 교육기회를 가지기 어려움
 - 장애인은 도보권 이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55.3%로 나타나, 직장선택에서 ‘위치’가 ‘능력’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
- 아동의 경우,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는 2000년 기준으로 207만 2천명인 반면, 보육시설은 15,915개소(56만명)에 불과하고, 교육시설(유치원)은 7,756개소에 53만명이 이용함으로써, 실제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의 52.6%만이 보육시설 등의 혜택을 받음
 - 특히, 3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실제 수요 중 17%(15만명) 정도만 시설을 이용함
-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수한 목적의 시설 공급만을 대책으로 여기고, 기존의 학교, 공원 등 생활권 내 근린공공시설, 근린생활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

2.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정비방안

■ 노인

- 주간보호시설의 확충
 -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,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권내 주간보호시설의 보급이 가장 중요함
 - 동사무소, 파출소, 노인정 등 기존의 근린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아파트를 혼합용도로 개발하여 저층에 주간보호시설을 공급할 수 있음
-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개발
 - 읍·면·동 단위 주간보호시설에서 이동가능한 노인을 위한 시설 내 서비스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(개호, 식사, 운송, 취미생활, 일상생활 서비스 등)를 제공해야 함
- 다양한 노인주거형태의 개발
 - 생활권 내에 입지한 양로원은 아래층을 주간보호시설로 이용하여 많은 지역 노인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하고, 요양원도 주변지역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노인서비스를 복합화 함
 - 고아원, 영아원 등과 양로원을 3세대형 시설로 통합
 - 임대아파트 등을 이용해 3~7명 내외의 노인들이 함께 사는 group home을 공급하고 내부를 개조해 편의시설을 갖추으로써 격리수용이 아닌 생활권 내 거주를 보장함

■ 장애인

- 건축물 내 편의시설의 공급
 - 공공시설, 대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확보되어야 함
 - 신규주택의 경우 장애인, 노인, 어린이 등을 위한 보편적 설계(universal design) 기법을 마련하고,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용자, 무료 설계 등의 기술지원,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

- 도로 및 교통수단 등 교통시설에 있어서 편의시설 확충
 - 이동공간의 편의시설 :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, 점자안내판, 안내방송 등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, 엘리베이터, 완만한 경사로 등의 확보가 필수적임
 - 이동수단의 편의시설 확충 :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저상(底床)버스 및 리프트 버스를 공급하고, 새로 공급되는 지하철에는 휠체어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
- 중증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
 -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접근권의 확보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룹도 있으므로 생활권 내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제공, 노인을 위한 제반 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생활권 내에서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함

■ 취업여성과 아동

-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시설 확보
 - 기존 사회복지회관, 학교, 종교시설 등을 이용한 영아전담보육시설 확보
 - 영아의 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영아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의 확보
-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
 - 기존의 초등학교 운동장, 빈 교실 등 생활권 내 학교공간을 이용하고, 학교수업과는 다른 놀이 및 취미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

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단계적 정비원칙

-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은 새로운 건축을 필요로 하는 공급방안보다 우선함
- 자원봉사나 민간 복지재단의 활동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새로운 공공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시설공급보다 우선함
- 사회적 약자별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우선 공급함

국토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(hskim@krihs.re.kr, 031 - 380 - 0300)